



다.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관련

1

계약체결 후 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만 있는 업체의 경우 실적신고를 해야하나?

신고대상업체는 건설공사 실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사실적신고(2월, 건설기술인 포함)와 하여야만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자기건설 공사의 경우는 착공)되었으나, 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라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기성실적증명서는 기성액을 “0”으로 기재(발주자 날인 불필요)하여 제출합니다.

2

단일공사로 복합공종(토목과 건축공사가 함께 있는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분리신고는?

1건의 계약으로 체결된 건설공사는 공종을 분리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부대공사는 주된 공종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공사가 있는 경우

【 2020.12.31. 이전 발주공사 】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경우 원도급사는 하도급 준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하나, 하도급 준 금액은 실적신고시 별도양식을 통해 신고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 중 동일업종 건설업체에게 하도급 받은 하도급사는 자사가 시공한 부분을 신고하고 “발주자서면승낙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원

본대조필 하여 첨부해야 합니다.(미제출시 실적 불인정)

【 2021.1.1 이후 공공 발주 공사와 2022.1.1. 이후 민간 발주 공사 】 2021.1.1 이후 공공 발주 공사와 2022.1.1. 이후 민간 발주 공사분에 있어 종합건설사업 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입찰공고가 물품납품으로 발주된 경우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물품구매, 제작납품, 용역으로 계약되었더라도 해당 건설업 등록과 시공 (현장설치)을 입찰참가자격조건으로 제한하고 발주자가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발급 시 실적인정 가능합니다.

5 실적신고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 가능한지

실적신고 해당연도의 직전 2개연도 실적에 한해 정기 시공능력평가지 신고 가능

6 2024년도 기성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2024년도에 일부 및 2025년도 초에 나머지 금액을 발행할 경우 신고 방법

- 2024년도에 준공된 경우로 일부 세금계산서발행을 2025년도 초에 발행한 경우
- ☞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기성액을 신고서에 작성하고, 증빙서류로 2025 1/4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성실적증명서, 도급계약서사본, 인허가서류,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 보완해야 합니다.

7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공사가 있는 경우 실적신고 방법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공사의 주계약자는 자사의 기성액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성액을 포함(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기성액의 50%, 전문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기성액의 100%)하여 신고합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방식을 말함

8 건설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 자료로 허위실적 또는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제재처분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실적, 기술인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고 같은 법 제97조제2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9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해당공사의 기성금을 2025년에 수령하였을 경우 2024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시 공사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실제 기성부분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발주자로부터 기성부분에 대하여 건설공사 기성 실적증명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10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 가능 여부

승강기 설치공사는 전문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전문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나, 업역체계 개편으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에 있어서는 종합건설사업자도 해당공사의 수행이 가능하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2021.1.1일 입찰공고일부터, 민간공사에 있어서는 2022.1.1.일 입찰공고일(입찰공고일이 없을 경우 계약일)부터 적용)



11 신규 및 업종 추가시 시공능력평가방법

○ 신규로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추가 등록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는 경우

☞ <https://ncons.cak.or.kr>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하신 후 프로그램에 자료입력 및 전송(제출서류는 대한건설협회 본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규 시공능력평가지 제출서류

- ① 신규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신청서(전산 출력물)
- ② 종합건설업 영업기간 확인 동의서 원본(전산 출력물)
- ③ 건설업등록증 사본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⑤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⑥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 ⑦ 건설업 등록 신청 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 ⑧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해당업체만 제출)원본
- ⑨ 기술인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업종추가·변경시 제출서류

- ① 공문(업종추가·변경에 따른 시평액 신청요청)
- ②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직전월말 기준) 또는 정기결산서(재무제표, 외감대상은 감사보고서) 중 업종추가, 변경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서류
- ③ 기술인 보유증명서 원본

1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는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 복지 등에 대해 평가하여 우수한 건설사업자에게 시공능력평가지 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4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우수한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평가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3~5%를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평가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한 공사현장이 있을 경우 시공능력평가지 가산받을 수 있는지

건설사업자가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였을 경우 실적신고시 관련 사실에 대한 감리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공능력평가액에 가산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자의 신규 국내민간공사 건설현장수 대비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현장 수 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2~5%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체결한 공사현장만 해당되며 신고시 최초 1회만 시공능력평가에 가산)



14

공공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한 경우 시공능력평가지 실적으로 인정 되는지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구입하여 자재를 공급하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설치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시공능력평가지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체결한 공공공사만 해당)

15

직접시공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공능력평가지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7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수행하면서 직접시공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의 20%를 시공능력평가지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체결한 공공공사만 해당)